## 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4다300228 소유권이전등기

원고, 피상고인 원고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

피고, 상고인 피고 1 외 15인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

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4. 10. 2. 선고 2023나15885 판결

판 결 선 고 2025. 1. 23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원심의 판단

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의 점유취득시효가 그의 사망일인 2017. 4. 18.에 완성되었다고 보아,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의 취득시효

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일을 "2017. 4. 18."로 경정하였다.

## 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·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고,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(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7다3651, 97다3668 판결, 대법원 2000. 11. 14. 선고 2000다35511 판결 등 참조).

나.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- 1) 이 사건 토지는 1917. 10. 2.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 임야로서, 소외 1은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1967. 2. 1. 사망하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 3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. 소외 1의 아들인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한 2017. 4. 18.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 1의 분묘를 설치하였고, 2018년 4월경에는 원고의 고조부, 고조모 등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그 묘역을 관리하였다.
- 2)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외 3이 1931. 3. 10.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,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소외 1이 사망일인 2017. 4. 18.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소유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.

- 3)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, 소외 1 또는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묘역을 관리하여 왔다는 원심 인정 사실만으로 소외 1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지아니한다.
- 4)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소외 1의 자주점유를 인정하고, 이를 전제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.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.

## 3. 결론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노경필

대법관 노태악

주 심 대법관 서경환

## 대법관 신숙희